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68
----------	-----------

제안일자 : 2023년 2월 24일

제안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개정안에 따른 적용대상을 “초고층 건축물”로만 한정하기보다는 ① 초고층 건축물, ②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③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포함하는 “초고층 건축물등”으로 확대하여 조례 개정의 효과를 제고하고,
- 대피 동선 안내를 위한 활용기술을 “신기술”로 특정할 경우 특허와 같은 유사기술의 진입장벽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기술”로 수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2. 주요골자

가. 약어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1항).

나. “초고층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등”으로, “신기술”을 “기술”로 수정함(안 제11조).

서울특별시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초고층 건축물등”을 “제3조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안 제11조의 제목 “초고층 건축물의 대피 및 피난유도”를 “초고층 건축물등의 대피 및 피난유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의 상시근무자”를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초고층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로, “신기술을”을 “기술을”로 한다.

서울특별시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초고층 건축물등”을 “제3조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초고층 건축물등의 대피 및 피난유도)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초고층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재난위치를 인지하고 신속·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대피 동선 안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u>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u>제11조</u> (생략)</p>	<p>제4조(책무) ① ----- ----- ----- <u>제3조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의</u>----- -----</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11조(초고층 건축물등의 대피 및 피난유도)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초고층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재난위치를 인지하고 신속·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대피 동선 안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u></p> <p><u>제12조</u> (현행 제11조와 같음)</p>